

해 외 구미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구 미 시

해외 구미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9.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가. 구미시는 세계화 시대에 새로운 지역발전모델을 수립하고 독일 및 중국 내 경제교류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 하고자 해외 구미통상협력사무소를 개설·운영하고 있음.

나.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통상 분야 지원뿐만 아니라 적극적 교류활동 전개로 지역경제 및 민간교류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함.

다. 이에 해외 구미통상협력사무소(독일·중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0년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1) 출연금액 : 금360,000,000원(시비)

- 독일통상협력사무소 210백만원/ 중국통상협력사무소 150백만원

(2) 주관기관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3) 관련법령

- 법령 : 지방재정법(제18조), 지방자치 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 조례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나. 주요 사업

(1) 통상 분야 지원

- 관내 중소기업 시장개척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바이어 찾기, 매칭 등 해외시장 판로개척
 - 신규진입 시장 조사 및 분석 대행
- 해외박람회 참가기업 지원
 - 숙소, 통역, 바이어 상담 등 기업체 전반적인 지원
 - 박람회 참가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지속 진행
- 현지 공관, 코트라무역관 및 지·상사 네트워크 구축

(2) 신성장 산업 육성 지원

- 차세대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 첨단소재(Carbon Fiber), IT, 자동차 연계산업 육성지원

(3) 국제협력 및 교류분야 지원

- 현지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구미시 관광자원 홍보
- 양국 간의 민간교류 활성화 추진(문화·스포츠·관광 등)
- 현지 각종 행사 참가를 통해 구미시 및 관내기업 제품 홍보

(4) 기타사업

- 해외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 노인요양전문치료사 파견사업
- 구미시 주재국 대표부 역할 수행
 - 구미시 기업인, 기관단체 등에 현지 방문활동 및 행정지원

다. 출연의 필요성

- (1) 구미시는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럽 및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고 수출지원과 신규 투자자 발굴 등 적극적인 통상활동 전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
- (2) 또한 구미시의 주재국 대표부 역할 수행을 통한 양국 간 국제협력 및 교류분야(문화, 스포츠, 관광 등) 활성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재원의 조달) 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대학, 연구소,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
 4.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 ② 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보조할 수 있다.

제4조(사업) 기술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사업
2. 기술교육훈련사업
3. 인력양성사업
4. 창업보육 및 성장보육지원사업
5. 정보교류사업
6. 기술혁신지원사업
7. 시험생산사업
8. 시설·장비 운용사업
9. 전자·정보통신기기 등 부품소재육성사업
10.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탁사업과 용역사업
11. 그 밖에 기술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소관 실·과		기업지원과
입 안 자	과 장	최 동 문
	담 당	장 인 수
	담 당 자	정 은 희 (480-6103)